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에 대한 확인 및 증명서류 발급,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나.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유입 흰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인 목구조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방제를 추가하여 이에 대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나.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여부에 대한 확인·취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다. 목재이용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기준 마련(안 제25조)

라. 목구조기술자의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안 제 28조 제2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마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0조의5의 제목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0조의5제1항”을 “법 제10조의5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0조의5제6항”을 “법 제10조의5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등은 별표 1의3과 같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산목재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수리 증빙자료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매 증빙자료

2. 국산목재제품

가. 국산목재 구입·이용 증빙자료

나. 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 증빙자료

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 인증 증빙자료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이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류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 국내에서 적법하게 수확된 국산목재인지 여부
2. 규격·품질기준 등에 적합하게 생산된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
- 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이의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6”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별표 1의5”를 “별표 1의7”로 한다.

제19조 중 “별표 1의6”을 “별표 1의8”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별표 1의7과”를 “별표 1의9와”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중 “제14조제1항제11호”를 “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표 1의8”을 “별표 1의10”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체검사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

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체검사공장:”을 각각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자체검사공장”을 각각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사업장”으로, “별표 1의9와”를 “별표 1의11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 1의10과”를 “별표 1의12와”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자재관리”를 “자재관리와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그 밖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2조제2항제1호의2 중 “영 제18조의4제2항”을 “영 제18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법 제22조제4항”을 “법 제2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9조제2호의2 및 제3호”를 “법 제39조제5호의3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6 중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운영
관리 및 자격증의 발급

제32조제4항제2호 중 “측정 및 공표”를 “측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법 제42조제1호”를 “법 제42조제3호”로 한다.

6. 법 제19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와 증명서류 발급

제33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법 제47조제1항”을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3부터 별표 1의10까지를 각각 별표 1의4, 별표 1의6부터 별표 1의10까지, 별표 1의11 및 별표 1의12로 하고,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11(중전의 별표 1의9)의 제목 “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인정 취소 및”을 “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인정 취소 및”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3]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제10조의5 관련)

1.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구분	세부사항
가. 응시자격	1)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
나. 시험과목	1) 목재교육개론 2) 목재교육실무 3) 목재교육방법론

<비고>

*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란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를 말한다.
다만,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할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본다

2. 기타사항

가. 목재관련분야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의 장은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에 대한 교육이수시간을 목재교육 전문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재문화진흥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라.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별표 1의5]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8조의2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확인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변경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한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해당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서 사용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도록 명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한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확인서 발급을 취소한다.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국산목재(제품) 이력 정보 확인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5항	확인취소		
나. 국산목재(제품) 정보를 변조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법 제19조 제5항	확인서의 변경 · 사용정지	확인서의 변경 · 사용정지	확인취소
다.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법 제19조 제5항	확인서의 사용정지	확인취소	
라. 확인서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5항	확인취소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 및 제26조의2제2항 관련)

1.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가. 일반기준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 (2)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4)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또는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2. 과징금의 부과 기준

- 가.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times \text{업무정지 일수} \times 0.13$$

- 다. 나목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라. 나목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1. 종이 형

(앞쪽)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1. 교부번호:

2. 성명: (한자:)

3. 생년월일:

사 진

3.5cm×4.5cm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목재 교육전문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림청 장 직인

변경사항란		
연 월 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 인
유의사항		

1. 목재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자격증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다.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 카드형(pvc)

(앞쪽)

제 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사 진 3.5cm×4.5cm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성 명
산 림 청 장 직인

55mm×85mm [폴리염화비닐(PVC)]

(뒤쪽)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이 사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목재교육전문가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55mm×85mm [폴리염화비닐(PVC)]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0	15	20
나.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	15	20
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24조제2항 2) 법 제24조제4항	법 제47조 제1항제1호	150 300	200 350	250 400
라.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	600	700
마. 법 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500	600	700
바. 법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	50	70	100
사.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00	200	4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통계·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u>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현황</u> 3. <u>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현황</u> 4.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 라. (생 략) 마. 그 밖에 목재 관련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u>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u> 3. (생략) ③ (생략) 제7조(분과위원회) 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목재이용활성화 분과위원회 가. (생략) 나. <u>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u> 다. (생략) 2.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 증의 교부 등) <신설> ① <u>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 문가 자격증”이란 별지 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말한</u>	<u>법」 제2조</u>-----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위원회) ① ----- ----- ----- -----. 1. -----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다.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 ① <u>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 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등은 별표 1의3과 같다.</u> ② <u>법 제10조의5제3항</u>----- ----- ----- -----
---	---

다.

② 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에 배치하는 목
재교육전문가는 2명 이상이어
야 한다.

<신 설>

제12조(인증·인정의 기준) 법 제
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
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8조의2(우선구매) ① (생 략)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비율을 말한
다.

<신 설>

--.

③ 법 제10조의5제7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삭 제>

제18조의2(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의4-----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산
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
부를 확인 요청하려는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
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신청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신 설>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산목재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수리 증빙자료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매 증빙자료

2. 국산목재제품

가. 국산목재 구입·이용 증빙자료

나. 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 증빙자료

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 인증 증빙자료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전자

<신 설>

<신 설>

<신 설>

문서로 된 증명서류를 포함한
다)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이 증
명서류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류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 국내에서 적법하게 수확된
국산목재인지 여부

2. 규격·품질기준 등에 적합하
게 생산된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

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인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증
명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국산목재·국산목재
제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이의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국산
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국산목재 또는

	<u>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18조의3(수입신고) 법 제19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u>별표 1의4</u> 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18조의3(수입신고) ----- ----- ----- <u>별표 1의6</u> ----- -----.
제18조의4(수입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u>별표 1의5</u> 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18조의4(수입검사 등) ① ---- ----- ----- ----- <u>별표 1의7</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u>별표 1의6</u> 의 자격을 말한다.	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 ----- ----- <u>별표 1의8</u> -----.
제19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① (생략)	제19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u>별표 1의7</u> 과 같다.	② ----- ----- <u>별표 1의9</u> 와 --.

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① (생략)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제1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이하 “규격·품질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인정 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이 경우 세부 지정·인정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 ⑩ (생략)

제20조(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로 규격·품질검

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제11호-----

--.

③ -----

----- 별표 1의10-----
--. -----

--.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20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
----- 자체검사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

-----.

1. -----

사를 하는 자체검사공장: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
것
가. ~ 다. (생략)

2.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
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
하여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육안(맨눈) 및 검사장
비로 검사하는 자체검사공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출 것

가. (생략)

나.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해당 항목
을 검사하는 자체검사공장
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
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공장
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
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 자체검사사업장: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 자체검사사업장:

가. (현행과 같음)

나. -----

----- 자체검사사업
장-----

② 자체검사사업장-----

③ (현행과 같음)

④ ----- 자체검사사업
장-----

제22조의2(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규격·품질 검사 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제23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판정취소,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및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② (생략)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제22조의2(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

----- 자체검사사업장-----

----- 별표 1의11과 ---.

제23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

----- 별표 1의12와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
와 자격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
조건축물의 자재관리에 관한 사
항을 말한다.

<신설>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
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
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
와 자격요건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자재관리와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
-----.

제28조의2(그 밖의 산림바이오매
스에너지센터) 법 제36조의5제1
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

	<u>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u> 1. <u>국립·공립 연구기관</u> 2.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u>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u>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1의2.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 이 <u>영 제18조의4제2항</u>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2. ~ 3. (생략) 3의2. <u>법 제22조제3항</u>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 ----- <u>영 제18조의4제3항</u>----- ----- ----- 2. ~ 3. (현행과 같음) 3의2. <u>법 제22조제4항</u>----- -----

규격·품질표시의 변경·사용 정지 처분 및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	----- ----- -----
3의3. <u>법 제22조제4항에 따른</u>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3의3. <u>법 제22조제5항</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39조제2호의2 및 제3호</u> 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 및 규격· 품질검사 관정의 취소에 관한 청문	5. <u>법 제39조제5호의3 및 제6호</u> ----- -----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 다.	③ ----- ----- ----- --.
1. ~ 1의5. (생략)	1. ~ 1의5. (현행과 같음)
1의6. 제20조제4항에 따른 <u>자체</u> <u>검사공장의</u>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1의6. ----- <u>자체</u> <u>검사사업장</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한다.	④ ----- ----- -----.
1. <u>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u> <u>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u>	1. <u>법 제10조의5제2항 및 제3항</u> <u>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u>

<u>부</u>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재 문화지수의 <u>측정 및 공표</u> 3.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u>목재제품명인 인정 신청 접수</u> <u>및 검토</u> ⑤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생 략) 2.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u>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u> <u>신청 접수 및 검토</u> 3. (생 략) 4. <u>자체검사공장의 지정</u> 5. 삭 제 <u><신 설></u> 6. (생 략) 7. 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수수 료의 징수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u>시험 운영관리 및 자격증의</u> <u>발급</u> 2. ----- ----- <u>측정</u> <u><삭 제></u> ⑤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4. <u>자체검사사업장</u>--- 6. 법 제19조제3항·제4항·제5 <u>항·제6항에 따른 국산목재</u> <u>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u> <u>취소와 증명서류 발급</u>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법 제42조제3호----- --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생략) 2.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u>목재제품명인 등의 인증·인정의 기준: 2016년 1월 1일</u> 3. 4. 삭제 5. 제20조에 따른 <u>자체검사공장</u>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6. 삭제 7. ~ 9. (생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5. ----- <u>자체검사사업장</u> ----- 7. ~ 9.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47조제1항<u>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목재산업과	
연 락 처	(042) 481 - 4204